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7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김혜지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종길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임춘대, 허훈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 등을 삭제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도법」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”를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,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.

제2조(종전의 제3조)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중 “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”을 “「한강수계법」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상수원”이란 「수도법」 제7조·제78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·공고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질개선사업”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삭 제></p>

<p><u>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</u> <u>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</u></p>	
<p><u>제3조(관리 · 운영)</u>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<u>시장이</u> 관리 · 운영한다.</p>	<p><u>제2조(관리 · 운영)</u> ----- ----- -- <u>서울특별시장</u>-----.</p>
<p><u>제3조의2 (생 략)</u></p>	<p><u>제3조 (현행 제3조의2와 같음)</u></p>
<p><u>제4조(세입)</u>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<u>제4조(세입)</u>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 략) 3. <u>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</u> <u>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</u> <u>전입금</u>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<u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</u> <u>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</u> <u>률」(이하 “<u>한강수계법</u>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<u>한강수</u> <u>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u></u></p>
<p>4. · 5. (생 략)</p> <p><u>제5조(세출)</u> 회계의 세출은 <u>한강</u> <u>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</u> <u>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</u> <u>드는 비용을 말한다.</u></p>	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조(세출)</u> ----- 「<u>한</u> <u>강수계법</u>」 제17조제2항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추계분석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